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91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3년 5월 30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스포츠·문화·여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고자
- 현대차GBC 공공기여를 활용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부지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체육관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후 기존 학생체육관을 철거할 예정임
- 이에 관한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업무협약 체결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약개요

- 협약명 :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
-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 목적 : 잠실종합운동장 내의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추진경과

- `15.4~`16.5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른 체육관 이전 협의
 - (최종) 운동장 내 이전, 개발 방향 향후 협의
- `17.10~`18.12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 이전 위치(최종:주경기장 서남측), 교육청 요구 프로그램 반영 및 공백 최소화 추후 협력 등
- `20.3 ~ `22.8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을 위한 행정협의체 진행 (7회)
 - 건축계획(안), 공유재산 이관방안 합의, 협약서(안)확정을 위한 협의 등
- `23.3 ~ `23.4 : 협약(안) 확정을 위한 협의 진행(공문 시행)
- `23.4 : 협약(안) 법률자문(협약서 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다. 주요 협약내용

- (제1~3조) 목적, 용어정의
- (제4조) 사업 추진방안
 - 1단계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수영장) 신축건립사업을 추진한다(착공 후 42개월)
 - 2단계로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 사업 추진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

○ (제5조) 업무역할

- 서울시 : 학생체육관 설계 및 감리, 설계/감리 용역 및 인허가 업무 일체,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이관 업무 일체
- 교육청 : 사업진행 관련 업무협조, 학생체육관 운영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이관 및 사용 협조, 기존 학생체육관 용도폐지 등

○ (제6조) 시설개요

- 대지면적 : 11,389m²(현재 학생체육관과 동일 면적으로 이전신축)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 25,151m²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 수영장(다이빙장포함),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등

○ (제7조) 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관리

○ (제8조)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 운영방안

- 공인급 최초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 부담한다
- 학생체육관 내 수영장과 민간투자사업 내 수영장은 각 기관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통합수영장 사용이 필수적인 행사 시 주관기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한다.(학생체육관 경영장을 워업풀로, 민간투자사업 경영장을 메인풀로 활용)
-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사용을 위해선 별도 세부협약(안) 마련한다

○ (제9조) 공용공간의 관리 및 사용

○ (제10조) 공유재산 이관

- (토지)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별도 협약체결 이후 現 학생체육관 부지(잠실동 10-3번지)와 학생체육관 신축 부지(신규지번 부여 예정)를 동일면적으로 이관한다.
- (건물) 공공기여 사업자는 학생체육관 신축건물을 준공검사와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생체육관 건물을 신축 학생체육관 준공일정에 맞추어 관련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 (제11조) ~ (제13조) 협약의 변경, 협약종료, 효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첨부자료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업무협약서(안)

5. 검토 의견

가. 제출배경

- 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내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의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이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임
- 본 업무협약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¹⁾이 수립된 후 2020년 3월 행정협의체²⁾를 구성하고 2022년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학생체육관 이전·신축과 관련한 건축계획(안), 공유재산 이관방안 및 협약서(안) 확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음

□ 행정협의체 합의 내용

- (건축계획) 기존 학생체육관 및 수영장 외에 추가 요구사항 반영한 설계 최종합의
※ 정규 다이빙장(25m×25m×5m), 시청각실(400석규모), 다목적실(4EA), 용역원실 등 반영
- (공유재산) 토지 상호 유상이관 및 신축건물 기부채납
- (시설사용) 現 학생체육관·수영장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 협약체결자 : 서울시(서울시장), 교육청(교육감)

-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4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임

1)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서울시 동남권계획과, 2017.10~2018.12)

2) 서울시(관계부서 팀장 및 담당), 서울시교육청(관계부서 장학사 및 팀과장), 용역사로 구성된 실무회의 협의체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나. 사업개요

-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고자 현대차GBC 공공기여³⁾를 활용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공공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학생체육관 부지 및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잠실운동장 일대 공공(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민자(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학생체육관을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이전·신축한 후 기존 학생체육관은 철거할 예정임

3)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8호(2019.6.27.))된 내용에 따르면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여 대상사업은 상위계획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및 사업별 실시설계 등을 거쳐 공공기여 총량의 범위내에서 시행할 대상사업 최종 확정”하며 그 대상사업 중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이전 등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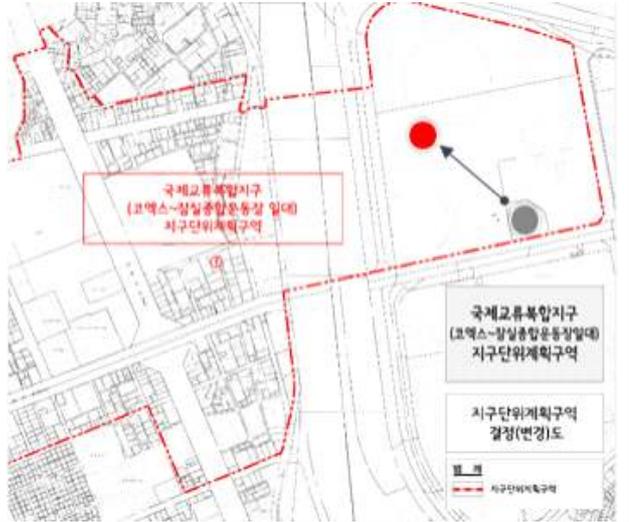
□ 학생체육관 건축개요

- (위 치) 주경기장 남서측 (현재 잠실동10-3번지와 동일면적으로 이전신축)
- (건축규모)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 25,151㎡
- (주요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다이빙장포함),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

□ 학생체육관 현재 위치



□ 학생체육관 이전 부지



다. 시의회 동의 절차 이행 근거

- 본 동의안은 협약서(안) 제8조제1항에서 ‘통합수영장의 공인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⁴⁾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판단됨
-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제1호)와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의 사무(제2호)가 해당됨

4) 검토보고서 붙임2)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참고

- 따라서, 기존 법령이나 조례에서 서울시가 인증 경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예산이 편성된 사무도 아니므로, 본 협약서(안)은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협약서(안) 제8조제4항에서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학생체육관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구간의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에서 담당 하도록 하고 있는데,
 - 협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서울시에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업무로 교육청 소관 행정 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재정적 의무를 서울시가 부담 하게 된다면 본 협약은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체육관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설계규모 확정 및 이전·신축으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함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는 민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학생체육관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추진방안 및 양 기관의 업무역할, 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관리,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 운영, 공용공간의 관리 및 사용, 공유재산 이관, 협약종료 시점과 효력 등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향후 통합수영장 운영,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주차시스템 및 주차정산 등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 및 공유재산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 세부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 세부 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 절차 여부는 추후 논의될 사항이라고 하나, 공공기여를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이번 동의안이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 발생이 예상되어 제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예산편성시에는 기관 간 역할과 업무분장을 감안한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이라 한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의 이전·신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이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 내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의 이전 및 신축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범위) 양 기관의 협약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 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학생체육관의 이전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공공기여 이행 협약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는 학생체육관의 신축에 관한 사항

제3조(용어설명)

1. 국제교류복합지구 :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166만㎡ 면적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공공기여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이행협약에 따라 민간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기반시설(공공시설 등) 설치를 제공 받는 것
3. 공공기여 사업자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에 따라 서울시와 공공기여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한 민간 개발사업자

4.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및 마스터 플랜 등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중 공공기여로 추진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5.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행되는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6. 통합수영장 : 학생체육관 내의 수영장과 이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을 통칭하여 일컬음
7. 공용공간 : 학생체육관 내 보행 및 차량이동을 위하여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구간과 공동으로 이용되는 통로, 주차장, 옥외공간 등과 같은 공간

제4조(대상지 및 사업추진방안)

- ① 본 협약의 대상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458,806㎡) 중 공공기여 협약에 따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구역(158,657㎡)으로 하며,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력한다.
 1. 양 기관은 서울시가 수립한 「잠실학생체육관 이전신축 기본계획 수립(18.12월)」의 내용을 유지· 존중한다.
 2. 1단계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의 사업 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의 신축 건립사업(착공 후 42개월(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을 추진한다.
 -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및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일정에 따라 학생체육관의 착공 및 준공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2단계로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 ② 양 기관은 제1항의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 중에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협조한다.
 1.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존 학생체육관 부지(잠실동 10-3번지) 제공 및 이전에 협조한다.

2. 서울시는 신축 학생체육관 전립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기존 학생체육관이 멸실되도록 협조한다.

※ 기존 학생체육관은 잠실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멸실한다.

제5조(업무역할) 양 기관은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서울시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체육관 신축 설계 및 감리

나. 학생체육관의 공공기여 관리

다. 도시계획변경, 설계 및 감리용역, 제영향평가 및 인허가 업무 일체

※ 공사는 공공기여 사업자가 시행하며, 공사 과정에서 주요사항 변경 발생 시 사전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한다.

라. 토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이관 업무 일체

2.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학생체육관 이전·신축 사업 진행에 따른 업무협조

나. 학생체육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일체

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이관 및 사용을 위한 업무협조

제6조(시설개요) 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신축 설계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대지면적 : 11,389㎡ (現 잠실동 10-3번지와 동일한 면적으로 이전)

※ 이전 위치는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하며, 필지 분할 후 신규 지번 배정 예정

②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25,151.49㎡

※ 건축허가 기준 면적이며 공공기여 확정 이후 공사금액이 증가되는 설계변경 불가

③ 주요시설

1. 실내체육관

2. 경영장(50m×10레인×2m), 다이빙장(25m×25m×5m) 및 수영 부대시설

※ 공인3급 인증이 가능하도록 기구 및 부대시설 계획수립

3. 시청각실
4. 업무시설 및 다목적실
5. 전용 주차장
6. 전기실, 기계실 등 학생체육관의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실

제7조(시설의 소유권 귀속 및 하자관리)

- ① 학생체육관 공사가 완료되면 양 기관이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된다.
- ② 학생체육관의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관련 서류를 서울시교육청(유지관리부서)에 인제하고 서울시는 공공기여 사업자 및 서울시교육청과 미리 협의하는 등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한다.
- ③ 학생체육관 인수인계 완료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공공기여 사업자에게 보수 등을 요청한다.

제8조(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운영)

- ① 통합수영장의 공인 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중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
- ② 학생체육관 내 수영장과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은 각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통합수영장 사용이 필수적인 행사 시에는 행사 주관기관에서 전용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인1급 행사 시, 학생체육관 경영장을 워업플로 사용하여 잠실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복합체육시설 내 수영장(경영장 및 다이빙장)에서 경기를 진행한다.
 2. 서울시 주관 행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서울시교육청 주관 행사는 서울시에서 지원한다.

- ③ 공인1급 수영대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간 통합수영장의 세부 운영협약을 마련하도록 한다.
- ④ 서울시는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보조경기장의 체육시설(트랙, 관람석, 조명탑 등)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운영안을 마련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9조(공용공간의 관리 및 사용)

- ①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구간의 모든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에서 담당한다. (단, 학생체육관 부지 내 전용공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한다.)
- ② 학생체육관의 이용을 위한 보행자 및 차량이 제1항의 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소형차량은 학생체육관 구역 내 독립적으로 주차할 수 있으며, 버스 등 대형차량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 ④ 양 기관은 주차시스템 및 주차정산 등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 잠실스포츠 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지하주차장의 통합연결 및 주차시스템 방안은 추후 민자사업자와 협의과정 필요

제10조(공유재산의 이관)

- ① 서울시의 일반회계 재산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을 상호 이관한다.
 - 1. 토지는 아래와 같이 이관한다.

서울시는 제2항의 공유재산 이관에 관한 별도협약 체결 이후 학생체육관의 신축 부지(신규 지번 부여 예정)를 現 잠실동 10-3번지(11,389㎡)와 동일 면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교환한다.
 - 2. 건물은 아래와 같이 이관한다.
 - 가. 공공기여 사업자는 신축 학생체육관 건물을 본 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한다.

나.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학생체육관 건물을 신축 학생체육관 준공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 서울시는 용도폐지된 학생체육관 건물을 멸실하도록 협조한다.

② 공유재산 이관에 관하여는 별도 세부협약을 향후 합의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 체결 후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학생체육관의 준공(검사) 및 공유재산 이관 절차가 완료되면 그 효력이 종료된다.

② 양 기관은 본 협약 종료 이후에도 보조경기장 세부운영 및 통합수영장의 유지 관리에 대한 별도협약을 체결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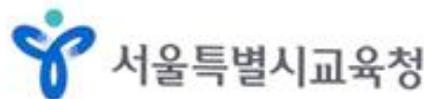
제13조(효력) 본 업무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
학생체육관 이전·신축에 관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8조(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의 운영)제1항 통합수영장의 공인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동의안에 제시된 공인 1급 수영장의 공인 비용은 최초 공인 시 30,000천원, 재공인 시 15,000천원, 공인기간은 3년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붙임: 대한수영연맹 공인규정(2021.01.21.) 공인료 기준표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동남권추진단 공공사업팀 김민서(☎ 2133-8250)

[별표 제1호]

공인료 기준표

공인품목	세부내역	공인료 (단위: 천원)	비 고 (공인기간)
수영장	특급수영장 신 규	50,000	3년
	특급수영장 재공인	25,000	
	1급 수영장 신 규	30,000	
	1급 수영장 재공인	15,000	
	2급 수영장 신 규	15,000	
	2급 수영장 재공인	10,000	
	3급 수영장 신 규	6,000	
	3급 수영장 재공인	3,000	
부대시설	전광판 및 계측장비(부정출발 감지 상판(일체형포함),전산장비 등)	30,000	2년
	정수 및 살균장치	30,000	
	타 일	7,500	
	수 조	7,500	
경기용품	경영 스타팅블록	5,000	2년
	트랙형 받침대 개별형	700	
	트랙형 받침대 일체형	700	
	경영 코스로프	700	
	배영렛지	700	
	수구골대	300	
	30초계	300	
	8분계	300	
	수구 코스로프	300	
	스프링보드	4,000	
	몸 체	2,000	

□ 건축개요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층, 연면적 25,151㎡
-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 수영장(다이빙장 포함), 시청각실, 다목적실 등
- 공사비 : 약 1,306억원

※ 전액 GBC공공기여'23.5월 설계 기준

- 공사기간 : '23. 8월 ~ '26. 12월(42개월)

□ 공인1급 통합수영장 운영계획

○ 통합수영장 배치도



○ 공인1급 규정

구분		공인 1급
종 목 기 준		경영/다이빙/수구/아티스틱스위밍
웬 업 폴 / 다이빙지상훈련장		필요
관 략 석		3,000석 이상
개 최 가능 대회	전국대회	전국체전 가능
	국제대회	기타 국제대회 가능 (올림픽 수구 종목 가능)
비 고		인천문학박태환수영장 부산사직실내수영장

□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9.30>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
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해당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